

[부속서 2] 시스템변경 관리기준

Rev.3

1. 시스템변경 정보 파악

- (1) KSR인증회장은 클라이언트에게 상호, 대표자, 주소, 인증범위 등 중요사항이 발생 할 경우, 지체 없이 KSR인증원으로 시스템 변경을 통보하도록 요구.[인증 계약서(KSR-CP02-F5) 제5조 (6)항 참조]
- (2)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이 변경 된 경우 지체 없이, "시스템변경 신청/조치서(KSR-CP-F2)" 또는 공문서 형태로 KSR인증원에 신청해야 함(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경우 사본 첨부).
단, "시스템변경 신청/조치서" 등의 접수가 지연될 경우 사후관리담당의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.
- (3) 심사팀장은 시작회의 시 시스템변경 유무를 파악하여 "심사노트(갑지)"에 기록.

2. 시스템변경 확인 및 조치방법

- (1)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 전에 클라이언트가 시스템변경을 신청한 경우

구 분	확인 정보	조치 책임자	조 치 방 법
상호 변경	사업자등록증	인증부서장	검토 후 인증서 재발급, Data base(DB) 변경
대표자 변경	사업자등록증	사후팀장	검토 후 DB 변경
사무부분 사업장 이전	사업자등록증	인증부서장	유선 확인 후 인증서 재발급 및 DB 변경
공장 이전, 인증범위 변경 또는 합병 <u>적용성보고서 변경</u>	사업자등록증 인증범위 관련 정보(공정도 등) <u>관련정보</u>	인증부서장 (검토:계약검토자)	1. 차기 사후관리심사 전 인증서 발급 희망 시 => 검토 후 인증규격별 0.5~1M/D 변경확인을 위한 특별사후관리 심사 후 검증에서 적합판정 시 인증서 재발급 및 DB변경 2. 차기 사후관리심사 후 인증서 발급 희망 시 => 유선 확인 후 차기 정기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 시 시스템변경 확인 후 조치 및 DB 변경
분사로 인한 인증서 추가발급	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(필요시)	KSR인증회장 (검토:계약검토자)	검토 후 분사된 클라이언트별 0.5~1M/D 변경 확인을 위한 특별사후관리 심사 후 검증에서 적합판정 시 인증서 재발급 및 DB변경 (단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 시점과 동일 할 경우, 확인심사를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로 대체하여 진행)
1년 이상 생산 및 A/S 중단	관련 정보	경영대리인 (검토:계약검토자)	검토 후 인증범위 삭제 또는 인증정지 등 후속조치 및 DB 변경
폐업	관련 정보	KSR인증회장	검토 후 인증취소 등 후속조치 및 DB 변경
기타 시스템변경	관련 정보	인증부서장	검토 후 후속조치 및 DB 변경

※ 사후관리담당은 클라이언트가 "시스템변경 신청/조치서(KSR-CP-F2)", "의견서" 등 시스템변경사항 발생 시,
접수 후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기록, 보고 및 조치(단, 대표자변경 및 소재지 단순표기변경은 생략함)

- (2)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 시 시스템변경이 발견/확인된 경우

- 1) 심사팀장은 확인된 변경사항이 심사팀 편성기준 및 심사 M/D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, KSR사후관리담당과 협의하여 후속조치.
- 2) 심사팀장은 확인내용 및 조치기록을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 기록(보고서)의 시스템 변경란에 기록하여, DB 변경 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.
- 3) 심사팀장은 인증수행범위 중 1년 이상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, 해당 인증범위 삭제(축소) 추천 등 조치(심사 철수 후, "심사원 의견서"를 작성하여 인증정지 등 조치). => 본 절차서 "[부속서 1] 4항" 참조.
- 4) 사후관리담당은 시스템변경 기록 확인 후 인증서 발행, DB 변경 등 후속조치가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.

- (3) 인증규격 전환으로 인해 시스템변경 확인이 필요한 경우

=> 인증부서장은 인정기관(KAB)의 시스템변경 관리기준(적용기간, 확인심사 기간 및 방법 등)을 충족시키고
인증규격의 변경 정도 및 영향을 고려하여,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시스템변경 확인방법을 수립(품의서)한 후,
경영대리인의 검토 및 KSR인증회장의 승인을 득하여, 해당 클라이언트에 송부 및 후속조치.